

業에 필요한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告示한都市計劃區域 안에 있는土地·建築物을課稅對象으로 하고 있는目的稅로서地方市·郡地域에서는都市地域과農村地域等이 혼재되고 있어서,都市計劃稅賦課를勸獎하는趣旨에서告示制度가運營되고 있으며우리서울特別市는全地域이都市計劃区域으로指定되어 있어서都市計劃稅賦課区域입니다. 1991年12月31日字條例第2860號에의하여서울特別市稅條例전문이改正되었기때문에節次上이告示도議會議決을거쳐서都市計劃稅賦課區域을다시告示코자하는것입니다.

主要骨子는서울특별시내에서도시계획부과지역을“서울특별시행정관할구역전지역”으로決定하고자하는것으로10月納期에土地分 때도並記해서都市計劃稅가添加해서나가고또6月달에建物分財產稅 때도都市計劃稅가添附가돼서나가게되어있습니다.

다음議案番號271號가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提案理由를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90.11.6자로改正된地方財政法施行令(令13156號)에따라공유재산의대부료등을算定함에있어公示地價를基準으로財產價額을算定하도록함에따라一部地域의대부료등이급격히상승하여대부료등부담이일시에높아지는문제점이있어대부료등의산출액이급증하지아니하도록대부료등을조정하기위한市·道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準則이'91.12.31자로內務部에서示達됨에따라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를改正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公有財產을繼續해서2個년以上占有하거나使用·受益하는경우에前年度年間貸付料보다10%이상增加한경우에는負擔이急증하지않도록下向調整.

参考事項으로關聯法規로서는地方財政法

施行令第92條가되겠습니다만조례내용은第23條의2貸付料등에관한特例規定을두는것입니다.公有財產을繼續해서2個年度以上占有하거나 사용·受益하는경우에第23條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年間貸付料,이것은使用料,辨償金을包含하는것입니다.이貸付料가前年度에納付하였거나納付하여야할年間貸付料보다10%이상增加한때에는當該年度의貸付料引上率은第23條의規定에불구하고다음과같이適用하도록되어있습니다.

増加率	貸付料引上率
10%以上~20%未満	10%+(増加率-10%)×0.3
20%以上~50%未満	13%+(増加率-20%)×0.1
50%以上~100%未満	16%+(増加率-50%)×0.06
100%以上~200%未満	19%+(増加率-100%)×0.03
200%以上~500%未満	22%+(増加率-200%)×0.01
500%以上~	25%+(増加率-500%)×0.005

實例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恩平區津寬內洞409番地29號강영달씨가占有하고있는道路敷地41.4坪에대하여는90年的課稅市價標準額에의거3萬5,300원이賦課되었는데91年度公示地價를基準으로算定을해보니까244萬5,450원,무려6,927%나上昇한結果가됐습니다.그래서이번이條例改正案에따른料率算定基準으로調整을해보면5萬5,425원이產出이되어서90年度보다57%정도가引上이되는이런내容이되겠습니다.이것이하나만예를들었습니다만各區에이런例가많이있고,또이것은市有財產에대해서보고드렸습니다만國有財產에관해서도이미국유재산법시행령이改正이되어서國有財產에대해서는積極으로이것이適用이되고있습니다.또한國有財產,區廳에서management하고있는財產에대해서도같은準則이區廳에도示達이되었기때문에우리22個區가운데서13個區가議會가開院이되어서13個區에서는이條例가審議·通過가되었고,나머지9個區에서는議會가開院이되는대로審議가될이